

무배당 하나확정기여형 자산관리 퇴직연금보험  
약관

하나생명보험주식회사

## 무배당 하나확정기여형 자산관리 퇴직연금보험 약관

- 제 1 조 **【목적】**
- 제 2 조 **【용어의 정의】**
- 제 3 조 **【단체 및 피보험단체(보험대상단체)】**
- 제 4 조 **【보험계약자】**
- 제 5 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자격】**
- 제 6 조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지정】**
- 제 7 조 **【운용관리기관의 수행업무】**
- 제 8 조 **【자산관리기관의 수행업무】**
- 제 9 조 **【계약의 성립】**
- 제 10 조 **【보험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 제 11 조 **【자산관리협정서 내용의 결정 및 변경】**
- 제 12 조 **【보험세목의 선택 및 변경】**
- 제 13 조 **【계약의 해지 및 이전】**
- 제 14 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추가가입】**
- 제 15 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탈퇴】**
- 제 16 조 **【계약의 승계】**
- 제 17 조 **【양도 및 담보의 제공】**
- 제 18 조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 제 19 조 **【부담금의 종류】**
- 제 20 조 **【부담금의 납입】**
- 제 21 조 **【특별계정의 설정 및 운용】**
- 제 22 조 **【급여의 산출 방법】**
- 제 23 조 **【운용관리 수수료의 지급】**
- 제 24 조 **【배당금의 지급】**
- 제 25 조 **【소멸시효】**
- 제 26 조 **【해지시 구비서류】**
- 제 27 조 **【금리연동형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 제 28 조 **【금리연동형의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의 지급】**
- 제 29 조 **【이율보증형의 단위보험】**
- 제 30 조 **【이율보증형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 제 31 조 **【이율보증형의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의 지급】**
- 제 32 조 **【실적배당형의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 지급】**
- 제 33 조 **【실적배당형 펀드의 운용 및 평가】**
- 제 34 조 **【실적배당형 적립금에 대한 계산】**
- 제 35 조 **【실적배당형 펀드의 유형】**
- 제 36 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펀드 선택 및 변경】**
- 제 37 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펀드자동재배분 선택】**
- 제 38 조 **【실적배당형 특별계정 자산의 평가 방법 및 운용】**
- 제 39 조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의 좌수 및 기준가격】**
- 제 40 조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의 제비용 및 보수에 관한 사항】**
- 제 41 조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의 폐지】**
- 제 42 조 **【퇴직소득세 등의 원천징수 의무】**
- 제 43 조 **【인감신고】**
- 제 44 조 **【 회사의 퇴직연금제도 관련 업무 중단 등에 따른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손실보상 】**
- 제 45 조 **【분쟁의 조정】**
- 제 46 조 **【관할법원】**
- 제 47 조 **【약관의 해석】**
- 제 48 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 제 49 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 제 50 조 **【준거법】**
- 제 51 조 **【약관의 변경】**
- 제 52 조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

##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의 목적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 19 조에 기초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이하 “연금규약”이라 합니다)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이하 “퇴직연금제도”라 합니다)를 설정한 사용자와 퇴직연금사업자인 하나생명보험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법 제 29 조에서 정한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함에 있어 세부사항을 정함에 있습니다.

##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입자”라 함은 법에 따라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가 설정한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자로 장래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하 “퇴직연금”이라 합니다)의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자를 말하며, 이 계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입니다.
2. “운용관리기관”이라 함은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계약자와 법 제 28 조 제 1 항에서 규정한 운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운용관리계약을 체결한 퇴직연금사업자를 말합니다.
3. “자산관리기관”이라 함은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계약자와 법 제 29 조 제 1 항에서 규정한 자산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한 퇴직연금사업자를 말합니다.
4. “급여”라 함은 퇴직연금제도로부터 가입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받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말하며, 이 계약의 보험금입니다.
5. “특별계정운용보수”라 함은 “특별계정운영보수”, “특별계정투자일임보수”, “특별계정수탁보수” 및 “특별계정사무관리보수”를 합한 보수를 말합니다.
6. “특별계정운영보수”라 함은 특별계정에 속한 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을 위해 회사가 수취하는 보수를 말합니다.
7. “특별계정투자일임보수”라 함은 특별계정에 속한 재산의 투자일임을 위해 자산운용사 등 투자일임업자에게 지급하는 보수를 말합니다.
8. “특별계정수탁보수”라 함은 특별계정에 속한 재산의 보관 및 관리, 자산운용 지시의 이행, 운용업무의 위규여부 등을 감시하기 위하여 신탁업자에게 지급하는 보수를 말합니다.
9. “특별계정사무관리보수”라 함은 특별계정에 속한 재산의 회계업무 및 기준가격 산정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일반사무관리회사에게 지급하는 보수를 말합니다.

② 제 1 항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및 퇴직연금감독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 제 3 조 【단체 및 피보험단체(보험대상단체)】

① 이 계약에서 “단체”라 함은 법 제 19 조에 의해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말합니다.

② 이 계약에서 “피보험단체(보험대상단체)”라 함은 동일 계약에 속하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집단을 말합니다.

## 제 4 조 【보험계약자】

이 계약의 계약자는 법에 의해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자로 다음 각 호에 정한 자로 합니다.

1. 동일 법인에 속하는 자에 의한 단체의 경우에는 그 법인
2. 동일 개인 사업주에 속하는 자에 의한 단체의 경우에는 그 사업주

## 제 5 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자격】

이 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제 14 조(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추가가입)에 의한 추가 가입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되는 자는 그 단체에 소속하고 있어야 하며, 그 단체의 연금규약에 의거하여 장래에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자로 합니다.

## 제 6 조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지정】

① 이 계약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연금규약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상속인으로 합니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계속근로기간(또는 퇴직연금제도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자를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납입한 추가부담금에 의한 적립금에 대해서는 제 1 항을 따릅니다.

### 제 7 조 【운용관리기관의 수행업무】

① 다음 각 호의 통지 또는 지시(이하 “통지”이라 합니다)는 관련 법규 및 계약자와 운용관리기관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운용관리기관의 업무에 속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자가 회사에 대해 통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운용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여야 합니다.

1. 부담금의 통지
2. 계약자의 적립금 운용방법에 대한 지시
3. 급여의 지급지시
4. 세금 등 기타비용에 관한 사항의 통지
5. 이전에 따른 계약자의 적립금 이전지시
6. 적립금의 반환통지
7.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운용관리기관이 수행하도록 정해진 업무

② 제 1 항에서의 운용관리기관의 통지가 회사에게 계약목적상 부적절 혹은 법령 등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사는 그 통지 등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는 통지 등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 제 8 조 【자산관리기관의 수행업무】

① 회사는 자산관리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1. 계좌의 설정 및 관리
2. 부담금의 수령
3. 적립금의 보관 및 관리
4. 운용관리기관이 전달하는 적립금의 운용지시의 이행
5. 급여 등의 지급
6.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자산관리기관이 수행하도록 정해진 업무

② 회사는 운용관리기관의 통지 등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제 9 조 【계약의 성립】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請約)과 회사의 승낙(承諾)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회사는 계약이 성립된 경우 지체없이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을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 제 10 조 【보험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분)를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다만, 통신 판매 계약은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분) 등을 광기록매체 및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하고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분)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당해 문서를 드린 것으로 보며,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하여 계약자가 사이버물(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에서 확인한 때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 제 11 조 【자산관리협정서 내용의 결정 및 변경】

① 자산관리협정서(이하 “협정서”라 합니다)에는 이 약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음 각 호 중 해당사항을 기재하는 것으로 합니다.

1. 계약에 관한 사항
2. 부담금의 종류에 관한 사항
3. 수수료에 관한 사항
4. 기타사항

② 제 1 항의 협정서는 이 약관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③ 계약 체결 이후 계약자는 연금규약의 변경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회사와 협의하여 제 1 항 각 호(제 3 호 제외)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제 12 조 【보험세목의 선택 및 변경】

- ①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계약 체결시 운용관리기관을 통하여 협정서 제 1 조 제 1 항에서 정한 보험세목(이하 “보험세목”이라 합니다)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할 수 있으며, 복수로 선택한 경우 부담금에 대하여 보험세목별 편입비율을 설정해야 합니다.
- ②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보험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운용관리기관을 통하여 보험세목을 변경 할 수 있습니다.
- ③ 제 2 항에 의한 보험세목 변경시 보험세목간 적립금 이전은 각 보험세목의 해지환급금 지급 및 부담금 납입 절차를 따릅니다.

## 제 13 조 【계약의 해지 및 이전】

- ① 이 계약의 계약기간 중 퇴직연금제도의 폐지·중단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제 28 조(금리연동형의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의 지급), 제 31 조(이율보증형의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의 지급) 또는 제 32 조(실적배당형의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 지급)에 따라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② 계약자는 운용관리기관을 통하여 자산관리기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해지환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자산관리기관으로 이전(이 약관에서 “계약이전”이라 합니다)하여 드립니다.
- ③ 회사는 운용관리기관에서 계약이전 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하여 3 영업일까지 계약이전을 받을 사업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고 관련 사무를 합니다. 다만, 적립금 매각에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은 지급기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④ 회사는 제 3 항의 지급기일 내에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급기일에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에 제 5 항에 따라 계산된 지연보상금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운용시 제 36 조(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편드의 선택 및 변경) 제 5 항에 해당하는 경우 등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⑤ 제 3 항의 지연보상금은 지급기일 시점에 정상 지급되어야 할 금액(이하 “정상 처리시 지급액”이라 합니다)에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 11 조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운용되었을 경우 “정상 처리시 지급액”이 “실제 지급액”보다 많은 때에는 그 차액을 더하여 보상합니다.

## 제 14 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추가가입】

- ① 계약자는 계약 체결 이후 새로이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이미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자로서 계약자의 과실 등에 의해 미가입된 자를 추가 가입시킬 수 있습니다.
- ② 피보험단체(보험대상단체)에 추가 가입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추가가입일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해 계약자가 피보험단체(보험대상단체)에 추가 가입시킨 날로 합니다.

## 제 15 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탈퇴】

계약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자산관리기관을 이전하거나 퇴직 및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외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피보험단체(보험대상단체)로부터 탈퇴시킬 수 없습니다.

## 제 16 조 【계약의 승계】

계약자는 제 3 자에게 이 계약상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 3 자는 계약자로부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이어야 합니다.

## 제 17 조 【양도 및 담보의 제공】

이 계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 경우에는 운용관리기관의 통지를 통해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1 의 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 303 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3 조의 2 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

-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 회로 한정합니다.
2. 6 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 1) 가입자 본인
    - 2) 가입자의 배우자
    - 3)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소득세법」 제 50 조제 1 항제 3 호에 따른 부양가족을 말한다. 이하 동일)
  3.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 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 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4 의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대학등록금, 혼례비 또는 장례비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 1) 가입자 본인
    - 2) 가입자의 배우자
    - 3)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5.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제 18 조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운용관리기관에 중도인출을 신청할 수 있으며,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운용관리기관의 중도인출 통지에 의해 중도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1 의 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 303 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3 조의 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 회로 한정합니다.
2. 6 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 1) 가입자 본인
  - 2) 가입자의 배우자
  - 3)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3.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역산하여 5 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역산하여 5 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제 19 조 【부담금의 종류】

이 계약의 부담금은 운용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회사에 통지한 금액으로 합니다.

1. 기본부담금은 연금규약에 의해 산정 또는 결정된 법 제 2 조 제 2 호에서 정하는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운용지시에 의하여 납입하는 부담금을 말합니다.
2. 추가부담금은 기본부담금 이외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연금규약에 의거하여 추가로 부담하는 부담금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운용지시에 의하여 납입하는 부담금을 말합니다.
3. 일시전환부담금은 퇴직보험 등 또는 이 제도 이외의 제도로부터 적립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전되어 납입되는 부담금을 말합니다.

#### 제 20 조 【부담금의 납입】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 1 회 부담금을 받은 때로부터 이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② 제 14 조(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추가가입)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추가 가입한 경우에는 회사는 추가 가입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하여 그 추가 가입일부터 이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③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 5 조(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자격)에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한 계약 부분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④ 계약자가 제 2 회 이후의 부담금을 납입하는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⑤ 실적배당형의 경우 납입된 부담금은 운용관리기관으로부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운용지시를 회사가 접수한 날부터 1 영업일의 기준가를 적용하여 펀드에 투입되며, 투입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해서는 금리연동형 공시이율로 적립하여 드립니다.

## 제 21 조 【특별계정의 설정 및 운용】

회사는 금리연동형, 이율보증형 및 실적배당형 펀드 유형별로 특별계정을 설정하여 이 계약의 부담금 및 적립금에 대해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기초하여 운용합니다.

## 제 22 조 【급여의 산출 방법】

연금계약에서 정한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보험세목별 적립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보험세목별 적립금은 각 보험세목별 부담금 및 적립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산출합니다.

## 제 23 조 【운용관리 수수료의 지급】

회사는 운용관리기관으로부터 운용관리수수료 지급 통지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수수료를 운용관리기관에 지급합니다.

## 제 24 조 【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금이 없습니다.

## 제 25 조 【소멸시효】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급여 청구권, 부담금 또는 해지환급금 반환청구권 등은 3 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제 26 조 【해지시 구비서류】

제 13 조(계약의 해지 및 이전)에 의한 해지시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해지 청구서(회사양식)
2. 해지환급금 수령대상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명부(회사양식) 또는 이전받을 회사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명부 사본
3. 기타 계약자가 해지 및 자산관리계약의 이전 등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 27 조~제 28 조는 금리연동형에 관한 사항으로 금리연동형을 선택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제 27 조 【금리연동형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① 금리연동형 적립금에 대한 적립이율은 매월 회사가 정한 금리연동형 공시이율로 합니다.

② 제 1 항의 금리연동형 공시이율은 아래의 방법에 따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매월 1 일 적용하며, 아래의 산출식에 의해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에서 향후 예상 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율을 가감하여 공시이율을 결정하며, 공시이율은 산출 공시기준이율의 80%를 최저한도로 합니다.

【공시기준이율의 산출】

1. 공시기준이율은 금리연동형 특별계정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지표금리를 2:1로 가중평균하여 산출합니다.
  2. 공시기준이율 산출식(%) = 
$$\frac{\text{운용자산이익률} \times 2 + \text{지표금리} \times 1}{3}$$
  3. 운용자산이익률 산출식
    - 운용자산이익률(%) = 
$$\frac{(2 \times \text{산출시점 직전 6개월간 투자영업수지차}) \times (12/6) \times 100}{(\text{산출시점 직전 7개월말 현재운용자산} + \text{산출시점 직전 1월말현재운용자산} - \text{산출시점 직전 6개월간 투자영업수지차})}$$
    - ※ 1. 투자영업수지차 = 투자영업수익 - 투자영업비용
    - 2. 투자영업수익 및 투자영업비용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4(계정과목별 회계처리기준)에서 정한 운용자산의 투자영업수익 및 투자영업비용으로 합니다.
    - 3. 투자영업수익과 투자영업비용의 산출기간은 공시기준이율의 산출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4. 지표금리 산출식
    - 지표금리(%) = 
$$\frac{A1 + A2 + A3}{3}$$
    - A1 : 국고채 (3년만기) 수익률의 산출시점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 A2 : 회사채(3년만기, 무보증, AA-) 수익률의 산출시점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 A3 : 통화안정증권 수익률의 산출시점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 ※ 지표금리 산출시 가중이동평균이율 = 
$$\frac{Mi(-3) + Mi(-2) + Mi(-1)}{6}$$
    - Mi(-3) : 산출시점에서 직전 3월의 16일부터 직전 2월의 15일까지의 회사채평균수익률, 국고채평균수익률, 통화안정증권평균수익률
    - Mi(-2) : 산출시점에서 직전 2월의 16일부터 직전 1월의 15일까지의 회사채평균수익률, 국고채평균수익률, 통화안정증권평균수익률
    - Mi(-1) : 산출시점에서 직전 1월의 16일부터 당월의 15일까지의 회사채평균수익률, 국고채평균수익률, 통화안정증권평균수익률
- (※) 1. 국고채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3년만기 국고채권의 최종호가수익률로 합니다.  
 2. 회사채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3년만기 무보증 회사채(AA-)의 최종호가 수익률로 합니다.  
 3. 통화안정증권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통화안정증권(1년)의 최종호가 수익률로 합니다.  
 4. 각각의 이율은 각월 직전 1월의 16일부터 당월 15일까지의 회사채평균수익률, 국고채평균수익률, 통화안정증권평균수익률을 기준으로 합니다.  
 5. 보험세목별 공시기준이율을 산출하는 시점에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최종호가수익률이 없는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대표적인 시장지표가 되는 다른 수익률(예, 시가평가기준수익률 등)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③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1.0%로 합니다.
- ④ 세부적인 공시이율 운용방법은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공시이율운용지침을 따릅니다.
- ⑤ 회사는 년 2회 이상 공시이율의 변경내역을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함)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대표자에게 서면 또는 기타의 방법(e-mail, 전자문서, Web 등)으로 통지합니다.

**【최저보증이율】**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용이율입니다. 예를 들어, 적립금이 공시이율에 따라 부리되며 공시이율이 0.5%인 경우(최저보증이율은 1.0%일 경우), 적립금은 공시이율(0.5%)이 아닌 최저보증이율(1.0%)로 부리됩니다.

**【공시이율】**  
 전통적인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이율이 장기고정금리이기 때문에 시중금리가 급격하게 변동할 경우 이에 대응하지 못하는 단점을 고려하여, 시중의 지표금리 등에 연동하여 일정기간마다 변동되는 이율을 말합니다.

## 제 28 조 【금리연동형의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의 지급】

- ① 회사는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제 6 조(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지정)에서 정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개인형퇴직연금 계정으로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급여는 법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 1 항의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회사에 대하여 직접 급여를 청구한 경우에는 운용관리기관에 그 사실을 알리고,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급여를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개인영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법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운용관리기관의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의 지급 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하여 3 영업일(이 약관에서 “지급기일”이라 하며, 적립금 매각에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은 지급기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내에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해야 하며, 지급기일내에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급기일까지 계산된 적립금에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 11 조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④ 제 3 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 3 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⑤ 계약일로부터 1 년 미만의 기간에 다른 자산관리기관으로 이전하는 경우 조기변경수수료를 적용합니다. 다만, 계약일로부터 1 개월 미만의 이전 또는 오토 스위칭(보험료 분산투입, 펀드자동재배분 등) 시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 29 조~제 31 조는 이율보증형에 관한 사항으로 이율보증형을 선택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제 29 조 【이율보증형의 단위보험】

① 이 계약에서 “단위보험”이라 함은 회사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운용지시에 의하여 납입되는 부담금 별로 설정되는 것으로 하며, 각 단위보험마다 설정된 보증기간을 “이율보증기간”이라 합니다.

②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부담금 납입시 회사의 협정서에서 정한 이율보증형 공시이율의 보증기간 중 각 단위보험에 적용될 이율보증형 공시이율의 보증기간을 설정하며, 각 단위보험을 설정한 날이 속하는 달에 회사가 공시한 이율보증형 공시이율로 이율보증기간동안 이 계약의 부담금 및 적립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적립금을 계산합니다.

③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이율보증기간 만기시점의 해당 단위보험 적립금으로 새로운 단위보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 2 항을 준용합니다.

④ 제 3 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이율보증기간 만기일까지 새로운 단위보험의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 회사는 단위보험 만기일에 직전 단위보험과 이율보증기간이 동일한 새로운 단위보험으로 자동 설정하는 것으로 하며, 이 경우 새로운 단위보험에 적용될 이율보증형 공시이율은 단위보험이 끝나는 날이 속한 달에 회사가 공시한 새로운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이율보증형 공시이율을 적용합니다.

⑤ 제 2 항 및 제 3 항에도 불구하고 단위보험은 이율보증기간 만기일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나이가 연금 규약에서 정한 정년퇴직에 의한 급여지급이 발생하는 나이(이하 “정년나이”라 합니다)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정이 가능하며, 제 4 항에 의한 단위보험 자동설정시에는 새로운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 만기일의 나이가 정년나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율보증기간이 가장 긴 단위보험으로 자동설정합니다. 다만,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 만기일에 정년나이까지의 기간이 최단기 이율보증기간보다 짧고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에는 금리연동형으로 보험세목을 변경하여 드립니다.

### 제 30 조 【이율보증형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① 이율보증형의 적립금에 대한 적립이율은 매월 회사가 정한 이율보증형 공시이율로 합니다.

② 제 1 항의 이율보증형 공시이율은 아래의 방법에 따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매월 1 일 적용하며, 아래의 산출식에 의해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을 가감하여 공시이율을 결정하며, 공시이율은 산출 공시기준이율의 80%를 최저한도로 합니다.

**【공시기준이율의 산출】**

1. 공시기준이율은 시중 실세금리를 반영한 것으로 「국고채 수익률」, 「회사채 수익률」, 「통화안정증권 수익률」을 산술 평균하여 산출합니다.

2. 1년 이율보증형 공시기준이율

$$\text{공시기준이율(\%)} = \frac{A1 + A2 + A3}{3}$$

A1 : 국고채(1년만기) 수익률의 평균값

A2 : 회사채(1년만기, 무보증, AA-) 수익률의 평균값

A3 : 통화안정증권(1년) 수익률의 평균값

3. 2년 이율보증형 공시기준이율

$$\text{공시기준이율(\%)} = \frac{A1 + A2 + A3}{3}$$

A1 : 국고채(2년만기) 수익률의 평균값

A2 : 회사채(2년만기, 무보증, AA-) 수익률의 평균값

A3 : 통화안정증권(2년) 수익률의 평균값

4. 3년 이율보증형 공시기준이율

$$\text{공시기준이율(\%)} = \frac{A1 + A2 + A3}{3}$$

A1 : 국고채(3년만기) 수익률의 평균값

A2 : 회사채(3년만기, 무보증, AA-) 수익률의 평균값

A3 : 통화안정증권(3년) 수익률의 평균값

5. 5년 이율보증형 공시기준이율

$$\text{공시기준이율(\%)} = \frac{A1 + A2 + A3}{3}$$

A1 : 국고채(5년만기) 수익률의 평균값

A2 : 회사채(5년만기, 무보증, AA-) 수익률의 평균값

A3 : 통화안정증권(5년) 수익률의 평균값

(주) 1. 국고채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국고채권의 최종호가수익률의 평균값으로 산출 적용합니다.

2. 회사채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무보증회사채(AA-)의 최종호가수익률의 평균값으로 산출 적용합니다.

3. 통화안정증권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통화안정증권의 최종호가수익률의 평균값으로 산출 적용합니다.

4. 평균값은 산출일로부터 과거로 기산해서 5번째 영업일로부터 14번째 영업일까지 10영업일 동안의 해당 수익률을 산술 평균하는 것으로 합니다.

5. 보험세목별 공시기준이율을 산출하는 시점에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최종호가수익률이 없는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대표적인 시장지표가 되는 다른 수익률(예, 시가평가기준수익률 등)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③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1.0%로 합니다.

④ 세부적인 공시이율 운용방법은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공시이율운용지침을 따릅니다.

⑤ 회사는 년 2회 이상 공시이율의 변경내역을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함)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대표자에게 서면 또는 기타의 방법(e-mail, 전자문서, Web 등)으로 통지합니다.

#### 【최저보증이율】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용이율입니다. 예를 들어, 적립금이 공시이율에 따라 부리되며 공시이율이 0.5%인 경우(최저보증이율은 1.0%일 경우), 적립금은 공시이율(0.5%)이 아닌 최저보증이율(1.0%)로 부리됩니다.

#### 【공시이율】

전통적인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이율이 장기·고정금리이기 때문에 시중금리가 급격하게 변동할 경우 이에 대응하지 못하는 단점을 고려하여, 시중의 지표금리 등에 연동하여 일정기간마다 변동되는 이율을 말합니다.

### 제 31 조 【이율보증형의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의 지급】

- ① 회사는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제 6 조(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지정)에서 정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개인형퇴직연금 계정으로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급여는 법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② 제 1 항의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회사에 대하여 직접 급여를 청구한 경우에는 운용관리기관에 그 사실을 알리고,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급여를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법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③ 회사는 운용관리기관의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의 지급 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하여 3 영업일 이내에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해야 하며, 지급기일내에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급기일까지 계산된 적립금에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 11 조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 ④ 제 3 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 3 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⑤ 단위보험 설정일부터 해당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해지되는 경우 시장가격조정률(<별표 1> “시장가격조정률” 참조)이 적용된 금액입니다. 다만, 퇴직급여의 지급으로 인한 해지시에는 시장가격조정률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제 32 조~제 41 조는 실적배당형에 관한 사항으로 실적배당형을 선택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제 32 조 【실적배당형의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 지급】

- ① 회사는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제 6 조(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지정)에서 정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개인형퇴직연금 계정으로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급여는 법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② 제 1 항의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회사에 대하여 직접 급여를 청구한 경우에는 운용관리기관에 그 사실을 알리고,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급여를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법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③ 회사는 운용관리기관의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의 지급 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하여 3 영업일 이내에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해야 하며, 지급기일내에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급기일까지 계산된 적립금에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 11 조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다만, “정상 처리시 지급액”이 “실제 지급액”보다 많은 때에는 그 차액을 더하여 보상합니다.
- ④ 제 3 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 36 조(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펀드 선택 및 변경) 제 5 항에 해당하는 경우 등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 3 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제 33 조 【실적배당형 펀드의 운용 및 평가】

- ① 실적배당형의 펀드는 특별계정별로 독립적으로 운용되며, 자산운용실적이 적립금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매일 평가합니다.
- ② 제 1 항의 특별계정에서 관리되는 자산의 운용실적에 의한 이익 및 손실은 다른 계정의 자산운용에 따른 이익 및 손실에 관계없이 해당 특별계정별로 귀속됩니다.
- ③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제 36 조(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펀드 선택 및 변경)의 규정에 따라 제 35 조

(실적배당형 펀드의 유형)의 규정에 의한 펀드를 변경할 수 있으나, 각 펀드의 자산운용방법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여를 할 수 없습니다.

### 제 34 조 【실적배당형 적립금에 대한 계산】

- ① 실적배당형 적립금의 계산은 적립금과 부담금에 대하여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을 반영하여 이 계약의 부담금 및 적립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회사는 특별계정 적립금에서 매일 수수료(자산관리수수료, 특별계정운용보수)를 차감합니다.

### 제 35 조 【실적배당형 펀드의 유형】

- ①펀드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구체적인 펀드 유형 및 내용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1. 채권형 : 국내 투자적격채권[주식관련사채(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및 자산유동화증권 등을 포함], 채권관련파생상품 및 채권형 수익증권에 펀드순자산(NAV)의 90% 이상 투자함을 원칙으로 하며,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자산 등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다만, 채권관련 파생상품에 대한 위험평가액이 펀드순자산의 10% 이하에서 운영합니다.
  2. 혼합형 : 주식(코스닥주식 등 포함), 주식관련파생상품 및 주식형 수익증권 등에 펀드순자산의 40% 이하로 투자하고, 국내 투자적격채권[주식관련사채(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및 자산유동화증권 등을 포함], 채권관련파생상품 및 채권형 수익증권과 유동성확보를 위하여 유동성자산 등에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다만, 주식관련 파생상품과 채권관련 파생상품에 대한 위험평가액이 펀드순자산의 10% 이하에서 운영합니다.
  3. 인덱스혼합형 : 주식(코스닥주식 등 포함), 주식관련파생상품 및 주식형 수익증권 등에 펀드순자산의 40% 이하로 투자하고, 국내 투자적격채권[주식관련사채(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및 자산유동화증권 등을 포함], 채권관련파생상품 및 채권형 수익증권과 유동성확보를 위하여 유동성자산 등에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상기의 주식에 투자함에 있어 한국주가지수 200(KOSPI200) 등을 목표지수로 하여 인덱스지수의 수익률을 추종하도록 합니다. 다만, 주식관련 파생상품과 채권관련 파생상품에 대한 위험평가액이 펀드순자산의 10% 이하에서 운영합니다.
- ②제 1 항에서 운용자산인 유가증권 등의 가격변동 및 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를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③상기 투자 대상은 보험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률에 따라서 운용되고 그 관계법률이 제·개정될 경우 대체 또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제 36 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펀드 선택 및 변경】

- ①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계약 체결시 운용관리기관에서 제시한 제 35 조(실적배당형 펀드의 유형)에 정한 펀드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할 수 있으며, 복수로 선택한 경우 펀드별 편입비율을 설정해야 합니다.
- ②부담금은 제 1 항에서 설정한 펀드별 편입비율에 따라 분산 투입됩니다.
- ③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운용관리기관을 통하여 회사에 서면 또는 운용관리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의 사이버 창구로 펀드의 일부 또는 전부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펀드별 편입비율도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정한 바에 따라 변경됩니다.
- ④회사는 운용관리기관을 통하여 제 3 항에 의한 펀드의 변경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 41 조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의 폐지) 제 1 항 제 1 호 내지 제 3 호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변경요구일+5영업일” 이내에 현금을 이전하는 방식에 따릅니다.
- ⑤회사는 천재·지변, 유가증권시장의 폐쇄·휴장, 유가증권 등의 매각지연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 4 항에서 정하는 날까지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 및 향후 이전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펀드의 자산이 처분되는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현금을 이전하는 방식을 따릅니다.

### 제 37 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펀드자동재배분 선택】

- ①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부담금의 펀드별 편입비율과 계약자적립금의 펀드별 편입비율이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운용관리기관을 통하여 펀드자동재배분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적립금은 펀드자동재배분 지정일부터 매 6개월 단위로 펀드자동재배분 지정시 선택한 펀드의 편입비율로 자동 재배분됩니다.
- ②보험기간 중 운용관리기관을 통한 펀드의 편입비율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펀드 편입비율에 따라 자동 재배분되며, 이 경우 변경된 펀드자동재배분 지정일부터 매 6개월 단위로 재배분됩니다.

- ③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보험기간 중 운용관리기관을 통하여 펀드자동재배분을 선택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 ④ 펀드자동재배분은 펀드자동재배분 지정일부터 매 6 개월 단위로 실행되며, 실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다음 영업일에 실행됩니다.
- ⑤ 펀드자동재배분을 선택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펀드 변경요구는 펀드자동재배분 실행 예정일 직전 5영업일 이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 38 조 【실적배당형 특별계정 자산의 평가 방법 및 운용】**

- ① 특별계정의 자산은 원칙적으로 시가법에 의해서 평가하며, 시가법은 각 특별계정별로 적용됩니다.
- ② 특별계정 자산의 평가 및 운용은 보험업법, 보험업감독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르며 그 관계법률이 제·개정될 경우 대체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 39 조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의 좌수 및 기준가격】**

특별계정 좌수 및 기준가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출합니다.

1. 좌수

특별계정 설정시 1 원을 1 좌로 하며, 그 이후에는 매일 좌당 기준가격에 따라 좌단위로 특별계정에 이체 또는 인출합니다.

2. 좌당 기준가격

특별계정의 좌당 기준가격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며, 1,000 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 자리까지 계산하고, 최초 판매개시일의 기준가격은 1,000 좌당 1,000 원으로 합니다.

$$\text{좌당 기준가격} = \frac{\text{당일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text{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의 총 좌수}}$$

다만, 당일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라 함은 당일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의 총 자산에서 수수료(자산관리수수료, 특별계정운용보수)를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제 40 조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의 제비용 및 보수에 관한 사항】**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88 조(신탁계약의 체결 등)에 의한 보수, 그 밖의 수수료와 동법 시행령 제 265 조(회계감사인의 선임 등)에 의한 회계감사비용 및 채권평가비용 등을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자산에서 인출하여 부담합니다. 다만,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제공하는 데 드는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제 41 조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의 폐지】**

-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계정을 폐지할 수 있습니다.
  - 1. 당해 각 특별계정의 자산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자산가치의 변화로 인하여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해진 경우
  - 2. 당해 각 특별계정의 운용대상이 소멸할 경우
  - 3. 기타 제 1 호 내지 제 2 호에 준하는 경우
- ② 회사는 제 1 항에서 정한 사유로 각 특별계정을 폐지할 경우에는 운용관리기관을 통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폐지사유, 폐지일까지의 적립금과 함께 제 36 조(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펀드 선택 및 변경)에 따른 펀드 변경 선택에 관한 안내문 등을 작성하여 통보하여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펀드변경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가 유사한 펀드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제 1 항 및 제 2 항에서 정한 사유로 계약자가 운용관리기관을 통하여 펀드 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연간 펀드 변경 회수에 포함시키지 아니합니다.

**제 42 조 【퇴직소득세 등의 원천징수 의무】**

급여의 지급에 따른 퇴직소득세 등의 원천징수 의무는 관련 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 43 조 【인감신고】**

- ① 계약자는 인감을 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② 이 계약과 관련한 제반서류에 사용된 인감이 이미 제출된 인감과 대조하여 일치한 경우 급여 지급 및 기타 업무처리상 인감도용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회사는 책임지지 아니 합니다.

③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인감대신 서명날인을 신고함으로써 인감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제 44 조 【회사의 퇴직연금제도 관련 업무 중단 등에 따른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손실보상】**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해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금전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을 보상해야 합니다. 다만, 손실보상 방법은 회사의 다른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1. 회사가 퇴직연금제도 관련 업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퇴직연금사업자 등록의 말소를 신청
2.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의 퇴직연금사업자 등록 취소 처분

#### **제 45 조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 46 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종은 계약자의 주소지(계약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협의에 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제 47 조 【약관의 해석】**

-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 ③ 회사는 보상하지 않는 사항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 **제 48 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 **제 49 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 **제 50 조 【준거법】**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 **제 51 조 【약관의 변경】**

이 약관이 변경된 경우 변경일 이후 변경된 약관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계약자에게 변경된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제 52 조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금리연동형, 이율보증형의 경우에는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 부칙

###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제 2 조(경과조치)

①시행일 이전에 체결한 계약은 시행일부터 본 약관내용을 적용합니다.

②다만, 2016년 8월 31일 이전에 이율보증형 상품 또는 금리연동형 상품에 가입한 경우 해당상품을 유지할 때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2.2%로 하며, 2016년 9월 1일 이후에 이율보증형 상품 또는 금리연동형 상품에 가입한 경우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1.0%로 합니다.



(별표 1)

### 시장가격조정률

1. 이율보증기간 중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시장가격조정률(MVA: Market Value Adjustment)을 적용합니다.

단위보험 설정일부터 해당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해지되는 경우에는 적립금에 (1-시장가격조정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지환급금으로 합니다.

2. 시장가격조정률(MVA)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1) 1년 이율보증형 MVA

$$MVA = 1 - \left( \frac{1 + i_j}{1 + i_h} \right)^{n + \frac{m}{12}}$$

MVA의 최대한도는 5%, 최소한도는 0%로 합니다.

$i_j > i_h$  인 경우 또는 급여의 지급인 경우에는 MVA=0으로 합니다.

(2) 2년, 3년, 5년 이율보증형 MVA

$$MVA = 1 - \left( \frac{1 + i_j}{1 + i_h + 0.5\%} \right)^{n + \frac{m}{12}}$$

MVA의 최대한도는 10%, 최소한도는 0%로 합니다.

$i_j > i_h + 0.5\%$  인 경우 또는 급여의 지급인 경우에는 MVA=0으로 합니다.

주)

잔여보증기간 : 단위보험 해지일부터 단위보험 이율보증기간 말일까지 기간

$n$  : 잔여보증기간의 연단위기간

$m$  : 잔여보증기간의 연미만 월단위기간(월미만 절상)

$i_j$  :  $j$  번째 설정된 단위보험에 적용되는 이율보증형 공시이율의 공시기준이율

$i_h$  : 잔여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이율보증형 공시이율의 공시기준이율 (소수점 4째자리에서 반올림)

$$i_h = i_{h-1} + (i_{h+1} - i_{h-1}) \times \frac{m'}{12 \times n'}$$
 (소수점 4째자리에서 반올림)

$i_{h-1}$  : 해지일이 속한 달에 회사에서 공시한 잔여보증기간보다 작거나 같은 공시이율별 보증기간중 가장 가까운 이율보증기간에 해당하는 공시이율의 공시기준이율. 다만, 잔여보증기간이 공시되는 이율보증기간 중 최단기이율보증기간보다 작은 경우  $i_{h-1}$ 은  $i_{h+1}$ 로 하며  $i_{h-1}$ 의 이율보증기간은  $i_{h+1}$ 의 이율보증기간으로 합니다.

$i_{h+1}$  : 해지일이 속한 달에 회사에서 공시한 잔여보증기간보다 크거나 같은 공시이율별 보증기간중 가장 가까운 이율보증기간에 해당하는 공시이율의 공시기준이율

$n'$  :  $i_{h-1}$  이율보증기간부터  $i_{h+1}$  이율보증기간까지의 연단위 기간

$m'$  :  $i_{h-1}$  이율보증기간부터 잔여보증기간까지의 월단위 기간(월미만 절상)

3. 해지되는 시점에 단위보험의 잔여보증기간에 해당하는 공시이율이 해당 단위보험 설정시의 공시이율보다 높을 경우 해지환급금은 시장가격조정률(MVA)을 적용하여 적립금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